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2권
2009년 5월 pp.163~186

논문접수일 2009.04.30
논문심사일 2009.05.13
심사완료일 2009.05.23

CISG상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과 계약해제권에 관한 외국중재판정사례 연구

이기섭* · 안건형**

-
- I. 서 론
 - II. CISG상의 매도인의 구제에 관한 개괄적 고찰
 - III. 부가기간지정권과 계약해제권에 관한 중재판정사례
 - IV. 결론 및 시사점
-

I. 서 론

세계적으로 각기 다른 법률과 법제는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상인과 기업들에게는 장애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국가의 법률에 달리 대처해야 하는 상인들로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국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 대한상사중재원 과장,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제무역과 관련하여 통일된 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¹⁾

그러던 1980년 4월 10일에 62개의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들이 참석한 비엔나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는, 만장일치로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일명 비엔나협약 또는 CISG; 이하 ‘CISG’라 한다)을 채택하였다.²⁾ 이 협약은 2005. 3. 1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었으며, 그 결과 본 협약은 우리 법질서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법의 국제화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긋는 일대사건이다.³⁾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외국 중재판정사례를 통하여 CISG 상의 부가기간 지정권과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매도인의 구제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 제2장에서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과 계약해제권의 개념, 요건과 효과 등 규정들의 의의와 정확한 의미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에서 외국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실제 중재판정사례들을 통해 제63조와 제64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며 해석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로는, 혀해관(2009), 하강현(2008), 김규남(2008), 하강현(2007), 손태우(2007), 석광현(2006), 안병수(2006), 손태우(2006), 오석웅(2006), 하강현(2005), 이천수(2002)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에 관한 사안만 다루고 있거나⁴⁾,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해서 다루고 있거나,⁵⁾ 이자(interest),⁶⁾

¹⁾ Franco Ferrari,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Vienna Sale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p. 2.

²⁾ Hon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 3.

³⁾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437면.

⁴⁾ 김규남, “국제매매계약 당사자간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한국관세학회, 2008), pp. 213-235; 안병수,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에 대한 구제권의 비교법적 고찰”,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한국무역학회, 2006), pp. 47-65; 이천수, “CISG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국제무역연구』, 제8권, 제1호(국제무역학회, 2002), pp. 289-315.

⁵⁾ 오석웅,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법학연구』, 제22

CISG의 적용범위,⁷⁾ 물품의 적합성 여부⁸⁾ 등 개별 주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구제에 관한 기존의 논문은 하강현의 논문⁹⁾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강현의 2005년 논문에서는 매수인의 의무 및 계약위반 유형이 개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매수인의 유형별 계약위반에 관해 상당한 양의 외국의 판례 및 중재 판정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각 판례 및 판정사례를 고찰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2008년 논문에서는 제3장에서 이행기전 계약해제권의 개념, 정당한 계약해제권 행사 사례와 그렇지 못한 판례 및 중재판정사례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의무 불이행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허해관의 2009년 논문¹⁰⁾에서는 매수인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신용장과 관련한 매도인의 구제권으로 부가기간지정권 및 계약해제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에 논자는 본고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에 관한 부분 중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과 계약해제권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문헌뿐 아니라 외국의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사례들의 실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병행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업계의 실무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향후 CISG가 적용되는 사건들이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국내법원에 접수되는 경우 중재인 및 판사들이 상기의 사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한국법학회, 2006), pp. 395~418; 석광현, 전개논문, pp. 437~479.

6) 손태우, “CISG 제78조의 이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아랍이슬람법(샤리아)의 법적 적용”, 『상사판례연구』, 제20권, 제3호(상사판례연구회, 2007), pp. 515~550.

7) 성석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있어서 비엔나 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중앙법학』, 제8권, 제2호(중앙법학회, 2006), pp. 283~305.

8)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한국무역학회, 2007), pp. 399~420.

9) 하강현, “CISG 하의 매수인의 계약위반 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학회지』, 제26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pp. 87~111;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제39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pp. 3~26.

10)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무역상무학회지』, 제41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pp. 103~132.

II. CISG상의 매도인의 구제에 관한 개괄적 고찰

1. 서 설

CISG 제3편(물품의 매매) 중 제3장 제3절에서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제61조 - 제65조)를 다루고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제조항(제71조 내지 제82조)인 제5장에 의해 보충된다.¹⁰⁾⁽¹¹⁾

CISG 하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에 대한 구제권을 갖는바, 그 구제권에는 약정구제권(約定救濟權)과 법정구제권(法定救濟權)이 있고, 전자는 그것이 유효한 한도 내에서 후자에 우선한다.¹²⁾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에서는 제61조에서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제63조에서는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제64조에서는 계약해제권, 그리고 제65조에서는 물품명세확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당사자들 간에 계약해석에 있어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¹²⁾과 계약해제권¹³⁾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0) Honnold, John O., *op. cit.*, p. 377.

11) CISG가 한 절에 계약의 다양한 계약위반의 구제에 대한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ULIS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고려되었던 점은 법률 제정적 테크닉으로서 그러한 틈(gaps)을 막을 수 있고, 당사자들의 모든 의무를 어느 한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CISG를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Günter Hager, *Commentary on Article 61*, in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eds.,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2nd (Englis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652.

12) 하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무역상무학회지」 제41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107면.

12) CISG 제63조 참조.

13) CISG 제64조 참조.

2. 부가기간지정권

이 조항에서는 매수인이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47조와 동일한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매수인이 이러한 부가기간 내에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해제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1) 부가기간지정권의 목적

제63조의 주된 목적은, 제47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대금결제 또는 물품의 적시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만일 매수인이 끝내 이행을 하지 않고 부가기간이 도과하게 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제64조 제1항 나호).¹⁵⁾

제63조 제1항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기간의 부가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CISG 제27조에 따라, 부가기간지정의 통지는 매수인에게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¹⁶⁾

매도인이 부가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는, 지정하는 기간이 달력(calendar)의 일자에 의해 결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히’와 같은 일반적인 이행 요구는 불충분하다. 두 번째 요건은 부가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다시 말해, 특정 사안의 실제 사정에 따라 너무 짧거나 길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¹⁷⁾

¹⁴⁾ CISG 제64조 제1항 참조; Honnold, John O., *op. cit.*, p. 350.

¹⁵⁾ Claude Witz, Commentary on Article 63, in Franco Ferrari, Harry Flechtner & Ronald A. Brand, eds., *The Draft UNCITRAL Digest and Beyond: Cases, Analysis and Unresolved Issues in the U.N. Sales Convention*;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2004, p. 744.

¹⁶⁾ Günter Hager, Commentary on Article 63, in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op. cit.*, p. 660.

¹⁷⁾ Ibid.

특히, 매매계약상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정도로 성실한 사람(person of reasonable diligence)이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시간” 내에 개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⁸⁾

(2) 매도인에 대한 구속력

매도인이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설령 매수인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이른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매도인은 이 기간 중에는 이행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조매각권¹⁹⁾ 역시 이 기간 중에는 배제되는데, 그 이유는 매수인이 부가기간 지정에 대해 응대하여 물품의 수령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명세확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²⁰⁾, 이는 부가기간 지정이 매수인 측에 그러한 정당한 기대를 창출시키기 때문이다.²¹⁾

위에서 언급된 매도인에 대한 구속 효과는 지정된 기간이 도과하거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그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는 때에 해제된다. 제63조 제2항의 문구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듯이, 그러한 통지는 매도인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 지정이 대금결제를 위한 기한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행의 자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이자와 물품을 보관하는데 발생한 비용들을 청구할 수도 있다.²²⁾

18) 허해관, 전계논문, 114면; 영국판례로 매매협약이 적용된 판례는 아니지만 *Garcia v Page & Co Ltd* 사건, (1936) 55 L.L.R. 391 참조. 허해관, 전계논문, 114면, 각주 59에서 재인용

19) CISG 제88조 참조.

20) CISG 제65조 참조.

21) Günter Hager, Commentary on Article 63, in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op. cit.*, p. 661.

22) Ibid.

3. 계약해제권

CISG 제64조에서는 매수인이 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계약해제권은 다른 구제권에 비하여 발 생요건이 보다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하거나 대금지급 또는 인도수령에 대한 부가기간을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²³⁾ 이 조항은 매도인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49조와 대칭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는 제81조 내지 제84조에 규정되어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계약해제는 제26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매도인의 통지를 요구한다.²⁴⁾

(1) 계약해제 요건

1) 본질적 계약위반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²⁵⁾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의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무의 불이행인지를 묻지 않으나, 그것이 사소한 계약위반에 불과할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도인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수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무인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와 관련이 있다.

대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을 지연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²⁶⁾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 거절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을 것임이 판

23) 허해관, 전개논문, 109면.

24) Claude Witz, Commentary on Article 64, in Franco Ferrari, Harry Flechtner & Ronald A. Brand, *op. cit.*, p. 746.

25) CISG 제64조 제1항 가호 참조

26) Landgericht Kassel, 21 September 1995, available on the Internet at <<http://www.jura.uni-freiburg.de/ipr1/cisg/ureeile/text/192.htm>>.

명되는 경우 매도인은 제71조에 따라 이행정지를 할 수 있다.

물품수령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물품수령의 종국적인 거절이나 물품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²⁷⁾

2) 부가기간의 위반

부가기간지정권²⁸⁾은 오직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또는 물품인도수령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외의 다른 의무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4조에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듯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들도 본 규정의 범주에 포함된다. 만일 매도인이 기타 의무들의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매수인이 종국적으로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가기간이 종료되면 매도인은 제64조 제1항 나호에 따라 계약해제권이 그 자체로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행지체는 이제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제64조 제1항 가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⁹⁾

(2) 계약의 해제와 효과

계약해제 통지는 반드시 매수인에게 통지되어야 하고,³⁰⁾ 그러한 통신의 멸실(loss) 또는 연착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³¹⁾ 본 협약 제81조 내지 제84조는 해제선언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³²⁾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

²⁷⁾ Claude Witz, Commentary on Article 64, in Franco Ferrari, Harry Flechtner & Ronald A. Brand, *op. cit.*, pp. 746-747.

²⁸⁾ CISG 제64조 제1항 나호 참조.

²⁹⁾ Günter Hager, Commentary on Article 64, in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op. cit.*, p. 665.

³⁰⁾ CISG 제26조 참조.

³¹⁾ CISG 제27조 참조.

³²⁾ CISG 제81조 제1항 참조.

며, 다만 1) 물품의 변형 및 훼손이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2)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기인한 경우, 그리고 3)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통상의 용법에 따라 소비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대체물인도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³³⁾ 나아가 매수인은 제82조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³⁴⁾ 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효과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미 인도된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계약의 해제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³⁵⁾

(3) 계약해제권의 제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지나친 지연은 제한되어야 하고³⁶⁾, 매도인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는 제49조와는 대칭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³⁷⁾ 본 조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그의 의무를, 비록 지연하였더라도, 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러한 이행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제권을 상실하게 된다.³⁸⁾ 그 외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³⁹⁾ 또는,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기간이 지정되고 그러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도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하게 된다.⁴⁰⁾

³³⁾ CISG 제82조 참조.

³⁴⁾ CISG 제83조 참조.

³⁵⁾ CISG 제61조 제2항 참조; Günter Hager, Commentary on Article 64, in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op. cit.*, p. 665.

³⁶⁾ CISG 제64조 제2항 참조.

³⁷⁾ Honnold, John O., *op. cit.*, p. 355.

³⁸⁾ CISG 제64조 제2항 가호 참조

³⁹⁾ CISG 제64조 제2항 나호 1목 참조

⁴⁰⁾ Claude Witz, Commentary on Article 64, in Franco Ferrari, Harry Flechtner & Ronald A. Brand, *op. cit.*, p. 748.

이행지연의 기간을 측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매도인의 계약해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재판정부 또는 재판부로서는 판단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절차를 가지게 된다. 매수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게 되는 즉시 계약해제권 상실의 망령(specter)과 조우하게 된다는 사실은 매도인이 조기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매수인의 이행지연이 명백히 본질적 계약위반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종국적으로 이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매도인의 후발적 인지는, 매도인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매수인의 이행지연에 따른 비해제적(non-avoidance) 손해의 회복을 제한하게 만드는 계약위반의 성질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⁴¹⁾

III. 부가기간지정권과 계약해제권에 관한 중재판정사례

계약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것 보다는 본 협약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기간을 지정하고 부가기간이 도과한 때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²⁾ 본 장에서는 합리적인 부가기간, 계약해제 발효시점 그리고 계약해제의 적법성에 관해 판단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제 중재판정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도인의 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매수인의 부가기간 지정 및 계약이 해제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 가에 대해 ICC 국제중재법원과 중국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간에 계약의 해제시점 판단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⁴¹⁾ Ibid., p. 464.

⁴²⁾ 석광현, 전계논문, 473면.

1. 부가기간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사례

(1) 사실관계

양당사자는 매도인의 패션 제품들의 브랜드를 매수인이 독점적으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하는 독점판매점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⁴³⁾ 본 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이 겨울/가을 시즌과 봄/여름 시즌용 각각 1회 또는 그 이상의 분할인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금결제수단은 L/C 베이스였다. 당사자들 간에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도중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일단 거래를 계속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이 1월에 매수인에게 가을/겨울 시즌용 가격 리스트를 보내면서 가격이 ‘약간의 변경’(little changes)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사자들 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리스트는 상승된 가격이 포함된 두 번째 리스트로 추후 대체되었다. 동년 6월, 매도인은 그 해 가을/겨울용 주문확인서(order confirmation)를 보내면서, 매수인에 대하여 ‘가능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주문확인서는 두 번째 리스트에 기초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첫 번째 가격을 반영하여 변경해 줄 것을 매도인에게 요청하였다. 매도인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였고, 가을/겨울 시즌용 물품의 가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몇 차례 이러한 차이점을 조율하기 위한 시도가 있은 후에 매도인은 동년 8월 2일 매수인에게 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청하였고, 만일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팅을 가진 후, 매수인은 동년 8월 10일 매도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상 본 계약의 해제를 삼가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화해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매수인은 8월 10일 답변을 하면서 “우리는 독점판매점계약상의 내용과 의도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미 해결의 선적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사항들을 보내 주시

⁴³⁾ Albert Jan van den Berg, ed., *Yearbook Comm. Arbn XXXI* (Kluwer 2007), pp. 148-171; ICC Case No. 11849, 2003.

기 바랍니다.”라고 적고 있다. 매수인은 수차례 매도인에게 신용장과 관련한 정보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동년 9월 12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매도인은 9월 19일에 본 계약을 해제하였다.

(2) 쟁점과 판시내용

1) CISG 적용여부⁴⁴⁾

본 사건에서는 CISG 적용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서에는 준거법이 CISG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⁴⁵⁾ 매수인은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이 단순한 매매계약으로 고려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계약과 같은 복잡하고 장기간 계약에 있어서 CISG가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단독중재인은 1) 준거법조항에서 신용장은 UCP 500에 따라야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들이 본건에서 특정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또한 “본 계약 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만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 전체를 관할하는 준거법은 CISG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명백한 본래의 의도로 보이며, 따라서 물품의 단발(single) 계약에 한해 CISG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판례는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CISG 준거규정을 명시하는 경우, 그리고 UCP⁴⁶⁾ 뿐만 아니라 INCOTERMS,⁴⁷⁾ URDG⁴⁸⁾ 등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각종 무역 관련 국제통일규칙들이 준거법조항에 규정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당사자들의 의도가 특정 국내법을 배제한

⁴⁴⁾ 본 판정사례에서는 CISG 적용여부에 대한 양당사자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는 본 주제와는 거리가 멀고, 지면의 제약 상 생략하기로 한다.

⁴⁵⁾ 참고로 본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재인은 본 계약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CISG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UCP 500(1993 개정판)에 따른다.”

⁴⁶⁾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⁴⁷⁾ 무역정형거래조건

⁴⁸⁾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준거법 조항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부가기간의 적절한 허용범위(length)

매도인의 8월 2일자 등기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표제의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는 본 계약서 제3조 제6항에 따라 이 서신을 매수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신을 통해 우리는 당신들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오고 있습니다. 상기 부가기간 내에 기요구된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매수인은 20일의 부가기간이 당시 처한 사정상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단독중재인은 두 번째 가격 리스트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불일치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수인은 첫 번째 가격 리스트에 근거하여 신용장을 충분히 개설할 수 있었을 것이고, 통상의 비즈니스에서 신용장 개설은 개설 요청 후 몇 시간이면 개설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본 계약 제3조 제6항 다호에서 신용장 개설이 매수확인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일의 부가기간 지정은 CISG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길이의 부가기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시한바, 이는 무역업계의 신용장 관련 실무 관행을 정확히 반영하여 내려진 명쾌한 판단으로 보인다.

3) 계약해제 시점

CISG 제26조에 따르면 계약해제 선언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두 번의 통지를 한 바 있다. 첫 번째는 8월 2일 통지로서 매수인에게 20일 내에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이었다. 9월 19일자 두 번째 통지에서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단독중재인은 CISG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기간을 지정한 8월 2일자 통

지는 즉각적인 해제가 성립될 수 없고 나아가 부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단독중재인은 CISG 제26조를 원용하면서 계약해제는 상대방에게 특정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⁴⁹⁾ 따라서 단독중재인은 계약해제 시점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두 번째로 보낸 통지 시점인 9월 19일에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매도인의 계약해제 유효성 여부

본건 단독중재인은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유효한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CISG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나호, 그리고 제64조 제2항 가호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뒤,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위한 부가기간을 매수인에게 부여하고⁵⁰⁾, 매수인이 그러한 지정된 부가기간 내에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데⁵¹⁾, 다만 매수인이 이행을 지연하였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인지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본건에서 단독중재인은 부가기간이 지정된 후 매수인이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매도인이 계약해제 서신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기 전에 이미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64조 제2항 나호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본건 단독중재인은 매수인이 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 요청에 대한 매도인의 늑장 대응 때문에 매수인의 계약의무 이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매수인에게 부여된 부가기간이 경과하는 것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자신의 귀책사유와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CISG 제80조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단독중재인의 판시내용은, 매도인의 무제한적 이행 요구의 가능

⁴⁹⁾ 단독중재인의 부가기간지정 통지와 관련하여, 마치 또 한 번의 계약해제 통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으나 논자의 견해로는 본 사건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판단으로 해석되어야지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유효성 여부”를 참고하라.

⁵⁰⁾ CISG 제63조 제1항 참조.

⁵¹⁾ CISG 제64조 제1항 나호 참조.

성과 그런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될 가능성 있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에 매수인의 부담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그의 손실을 계산함에 있어 적절한 일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매도인의 투기(speculation) 의도에 대해 정확히 간파하고 이러한 매도인의 투기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판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²⁾

2. 신용장 불개설에 기초한 본질적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사례

(1) 사실관계

양당사자는 2001년 2월 2일 매도인이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s) 3,000톤(± 5% 허용)을 CFR Zhuhai 조건으로 톤당 미화 670달러에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⁵³⁾ 결제조건은 취소불능신용장 조건이며 한국의 항구에서 2001년 2월 중에 선적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서의 내용 중 특이한 점은 추가약정(attachment)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는 점이다.

“효력이 있는(workable)⁵⁴⁾ 신용장은 늦어도 2001년 2월 18일까지 개설되어야 하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신용장이 지정된 기한 내에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위반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매도인은 그러한 신용장의 개설 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계약의 무를 위반한 매도인에 대해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매도인은 계약서

⁵²⁾ CISG 제76조 제1항 참조.

⁵³⁾ <http://www.cisg-online.ch/overview.php?test=1443> (2009. 4. 1 방문); CIETAC 2002년 증재판정사례(CISG on-line No. 1443).

⁵⁴⁾ 무역실무에서는 'workable'이라는 용어보다는 'operative'란 용어가 좀 더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 초안의 문안을 은행과 은행 간에 협의하는 과정 중의 초안 성격이 아닌 신용장 그 자체의 효력을 갖는 신용장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 중재조항에 따라 CIETAC 심천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매수인이 물품가격을 낮춰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선적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신용장 개설을 거절하였다. 계약이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매도인은 매수인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상을 하면서, 물품가격을 낮춰 주겠다는 의향을 전하였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본건 목적물인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s)는 쉽게 중합되는(polymerized)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장시간 고온으로 보관될 경우 중합하는 경향이 있다. 매도인은 양당사자 모두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의 업체에게 2001년 4월 26일에 톤당 미화 495달러에 재매각을 하였다. 시장상황의 변화로, 그러한 재매각은 매도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하게 되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을 하지 않은 것은 CISG 제25조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매수인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2001년 2월 9일 매도인에게 당시 주하이(Zhuhai)의 저장탱크들이 국내시장의 불경기로 인하여 모두 점유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하역일자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팩스로 질의한바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역을 연기하지 않으면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여도 하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당사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당시 매도인과 선적기한의 연기를 협상하고 있던 터라 2001년 2월 18일이 만기인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매도인은 2001년 2월 19일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팩스를 보내 선적연기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1년 3월 9일부터 4월 5일까지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에 관해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매수인은 본 계약을 누차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매도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겠다는데 합의하였다. 2001년 4월 6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오후 2시까지 매도인에 의해 초안된 본건 분쟁의 화해 합의서에 사인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일 오후 2시 20분, 매수인의 직원이 장기공급과 선적기간 등 상당한 변경(modification)을 추가하여 사인한 후 그 합의서를 매도인의 광저우 사무실에 팩스로 통지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최종 답변 통지기한이었던 2001년 4월 6일 2시 이후

한국의 기업에게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톤당 미화 495달러에 FOB 조건으로 재매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1년 4월 27일,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3,000톤의 물품을 광저우의 현지 다른 업체에게 당시 중국의 국내가격(local price)으로 재매각 하였다. 동년 4월 30일,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3,000톤의 물품 저장을 위하여 Zhuhai City Oil Company와 저장계약을 체결하였다.

2001년 7월 26일,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건 분쟁에 대해 중재신청을 하였다.

(2) 쟁점과 판시내용

1) 매수인의 신용장 미개설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는지의 여부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모든 사실과 증빙서류, INCOTERMS 2000, 그리고 CISG의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듯이 결제는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수인은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신용장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기에 물품을 선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매수인의 요청 후, 매도인은 합리적인 기간의 부가기간을 지정한 바 있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에 대한 거절이 계약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는데,⁵⁵⁾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지정한 이상 제64조 제1항 가호 상에 규정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해 판단할 실익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제63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 나호 만을 원용하여 판정을 한 것이다.

⁵⁵⁾ 중재판정문 어디에도 중재판정부의 판시내용에는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2) 계약의 해제시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낸 2001년 4월 6일자 서신에서 “2001년 4월 6일 오후 2시까지 화해 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며 당사자 간의 비즈니스 거래는 해제된다.”고 명백히 언급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증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의해 요청된 모든 조건에 동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판시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심지어 매도인에게 2001년 4월 9일에 보낸 서신에서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손실경감에 대한 입장⁵⁶⁾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 변경하고 추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살피건대, 매도인은 2001년 4월 6일 오후 2시 이후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지며, 실제로, 매도인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바 있다고 확인하였다.

매도인은 특정한 일자나 기간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시한을 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시한은 당해 부가기간이 이른바 최후의 시한(final deadline)이라는 뜻을 통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

통상 부가기간을 지정하는 매도인은 그 대상이 되는 의무를 적시하고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되, 다만 그 기간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까지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건에서 매도인은 이러한 의사도 명시적으로 담아 통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본 판정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계약해제의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해제 시간 까지 특정한 매도인의 부가기간 지정이 이 통지에 나타나는 부가기간 종료 시점이 경과하는 즉시 계약이 해제된다는 CISG의 규정을 문면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ICC 중재판정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⁵⁶⁾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는 CISG 상의 제74조 내지 제77조와 본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면의 계약으로 인해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

IV. 결론 및 시사점

CISG는 2005년 3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가 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제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CISG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사례에서는 CISG가 적용된 사건이 소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⁵⁷⁾ 그러나 국내의 한 대형 로펌의 국제중재팀에서는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분쟁이 CISG 가 준거법이 되어 해외의 국제중재기관에서 그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⁵⁸⁾

그런데 제3장에서 살펴본 외국의 중재판정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CISG로 지정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CIETAC의 중재판정사례들⁵⁹⁾에서는 당사자들이 모두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 회사가 CISG 체약국에 등록이 된 법인이라면 CISG를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CISG에서 침묵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나아가 국제관습이 보충하는 것으로 판시한 사실을 보면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계약서에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CIETAC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CISG를 그 준거법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⁶⁰⁾ 따라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한국의 기업과 법률가들은 앞으로 CISG에 더욱

⁵⁷⁾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 또는 ‘비엔나협약’이라는 용어로 검색해 본 결과 관련 판례를 찾을 수가 없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2009. 4. 12, 16:40 방문)

⁵⁸⁾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Matthew Christensen 미국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ICC에서 진행 중인 한국기업과 독일기업 간에 발생한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분쟁이 CISG 적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⁵⁹⁾ CIETAC 1999년 중재판정사건 <<http://www.cisg-online.ch/overview.php?test=1114>>, CIETAC 2002년 중재판정사건 <<http://www.cisg-online.ch/overview.php?test=1574>> 참조 (2009. 4. 26, 18:40 방문)

⁶⁰⁾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의 국가별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고, 2007년부터는 최대 수입 대상국이 된 만큼 분쟁도 그만큼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ISG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http://stat.kita.net/top/state/n_submain_stat_kita.jsp?menuId=01&subUrl=n_default-test_kita.jsp?lang_gbn=kor^statid=kts&top_menu_id=db11> (2009. 4. 12 18:35 방문).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CISG 상 매도인의 구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실제 중재판정사례를 통해 고찰해 본 본고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CISG에서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구제 중 본고에서는 매도인의 부가기간 지정권(제63조)과 계약해제권(제64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의 계약의무 이행을 위해 부가기간을 지정할 권한이 있고 이 기간은 합리적이 기간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기간은 앞에서 중재판정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획 일적 기준이 정해질 수는 없고 각 특정 사안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63조 제2항에서는 매수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이상 부기기간 중에는 다른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4조 제1항은 매도인의 계약해제 선언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가호에서는 매수인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나호에서는 매수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부기기간 내에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중재판정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기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 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제6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기기간이 지정되는 경우, 계약해제의 정확한 시점이 언제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ICC 중재판정사례와 CIETAC의 중재판정사례가 엇갈리고 있는데, ICC 중재판정사례에서는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 상의 부기기간의 종료 후 종국적 계약해제 통지를 한 시점으로 판단한 반면, CIETAC의 중재판정사례⁶¹⁾에서는 매수인이 특정 일자 및 일시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제 된다는 통지 상의 특정 일자 및 일시가 경과하는 시점이 계약해제 시점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CISG 상의 문면 규정은 후자의 판정내용이 일반적이나 전자의 판정사례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된다.

⁶¹⁾ <http://www.cisg-online.ch/overview.php?test=1443>

제64조 제2항은 매수인이 그의 의무를, 비록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러한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제권을 상실하게 되며(가호), 그 외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나호 1목), 또는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기간이 지정되고 그러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후(나호 2목)에는 매도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C 중재판정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의해 지정된 부가기간을 경과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매도인이 계약해제 통지를 매수인에게 하기 전에 이미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64조 제2항 나호를 원용하여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한 사실은 매도인의 입장에 있는 기업들로서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 위반,”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무역상 무학회지』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 하강현, “CISG하의 매수인의 계약위반 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학회지』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 _____,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Hon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Ferrari, F.,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Vienna Sale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 Claude Witz, Commentary on Articles 53–65, in Franco Ferrari, Harry Flechtner & Ronald Brand, eds, *The Draft UNCITRAL Digest and Beyond: Cases, Analysis and Unresolved Issues in the U.N. Sales Convention*,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2004.
- Günter, Hager, Commentary on Articles 61–65, in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2nd (Englis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Van den Berg, A., ed., *Yearbook Comm. Arb'n XXXI*,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 <http://www.cisg-online.ch/overview.php?test=1443>
- <http://www.cisg-online.ch/overview.php?test=1114>
- <http://www.cisg-online.ch/overview.php?test=1574>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http://stat.kita.net>

ABSTRACT

A Study on Foreign Arbitral Awards related to Seller's Notice Fixing Additional Final Period for Performance and Right to Avoid the Contract under the CISG

Yi, Ki Sub · Ahn, Keon Hyung

On April 11, 1980, the "United Na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was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nd approved by a diplomatic conference in Vienna providing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t took effect as of March 1, 2005, in Korea.

It is set forth on the seller's remedies for breach by the buyer Section III (Art. 61 – 65) under the CISG. In this study, the focus is only on the seller's notice fixing additional final period for performance (Art. 63) and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Art. 64), with examination on some relevant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by the ICC and the CIETAC together.

Article 63 provides that the sell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buyer of his obligation. It was found from the above arbitral awards that the concept of 'reasonable length' should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given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case [Art. 63(1)].

It is provided that unless the seller has received a notice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sell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2).

Article 64(1) provides the means and grounds for avoidance of the

contract, which can be avoided 1) when the breach of the buyer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2) whe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is fixed by the seller, unless the buyer declares that he will not perform so within the period of fixed time. As we examined in the above arbitral awards, it was held that the contract is avoided when the seller sends the final notice stating that he will avoid the contrac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the ICC award. On the contrary, it was held that the contract should be deemed to be avoided exactly when the expiration of additional period noted in the avoidance notice is elapsed in the CIETAC award. Article 64(2) sets time limits for avoidance.

Key Words : CISG, Remedies for Seller, Seller's Fixing Additional Final Period for Performance, Sell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